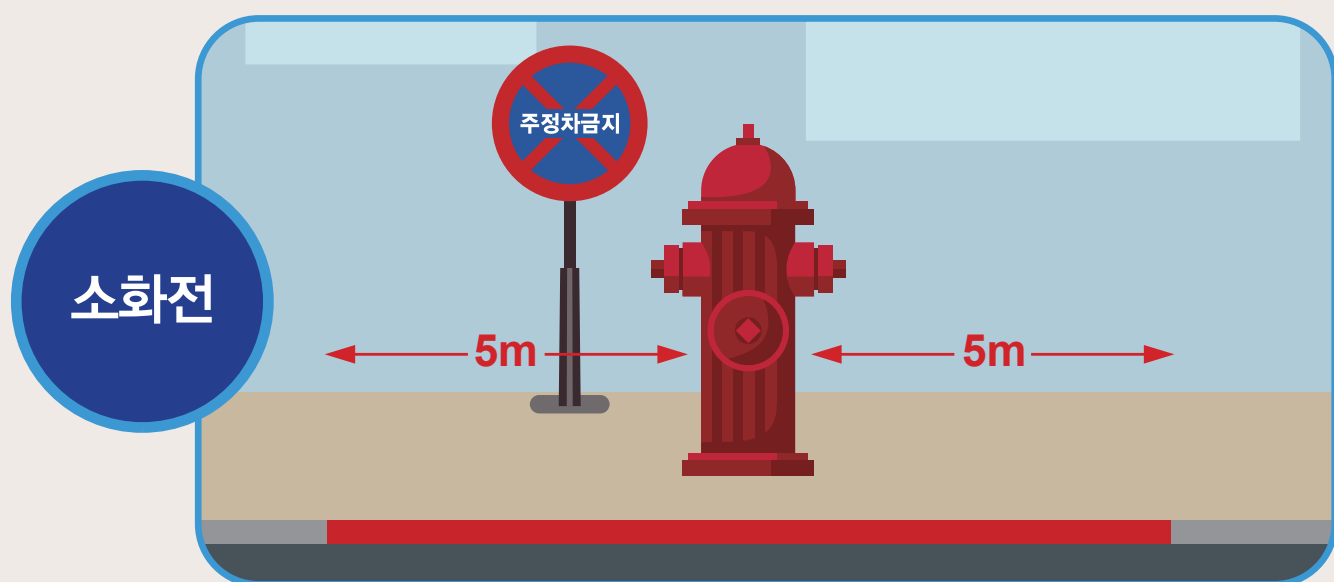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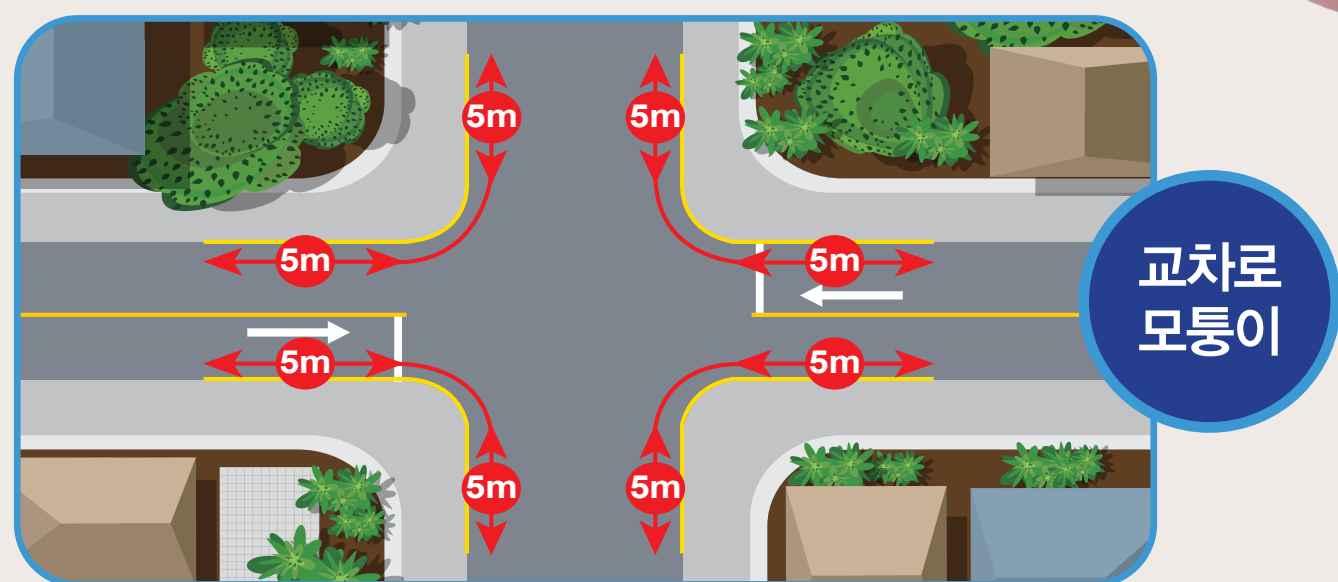


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**꼭** 비워주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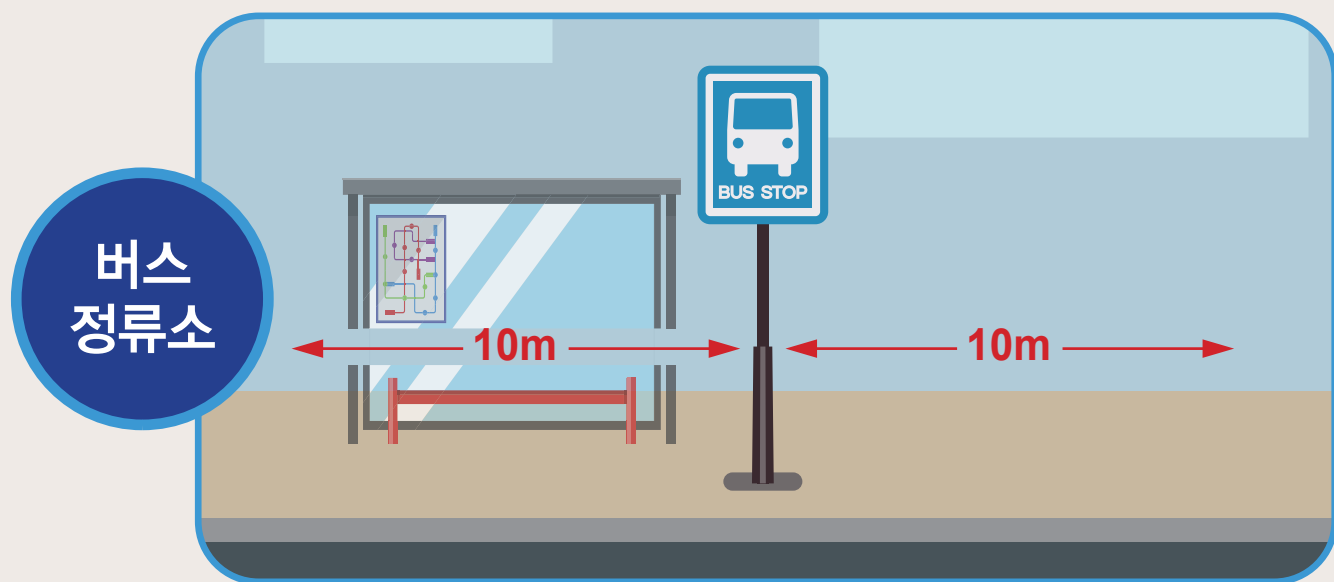
불법 주·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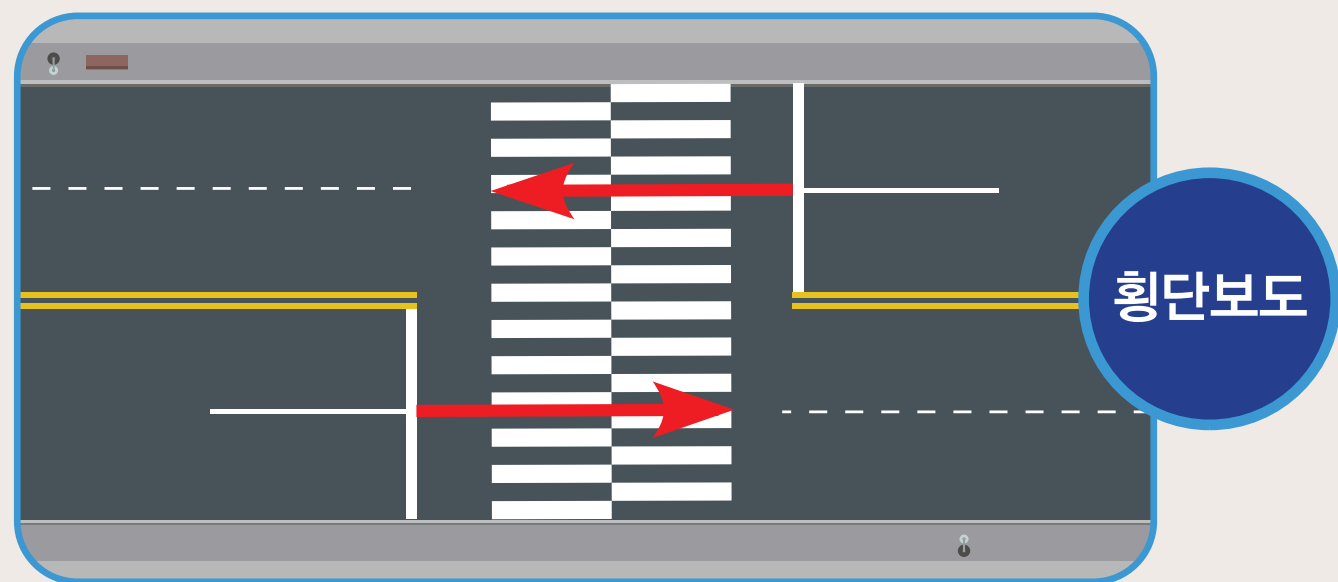
주·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
정지 상태 차량



주·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
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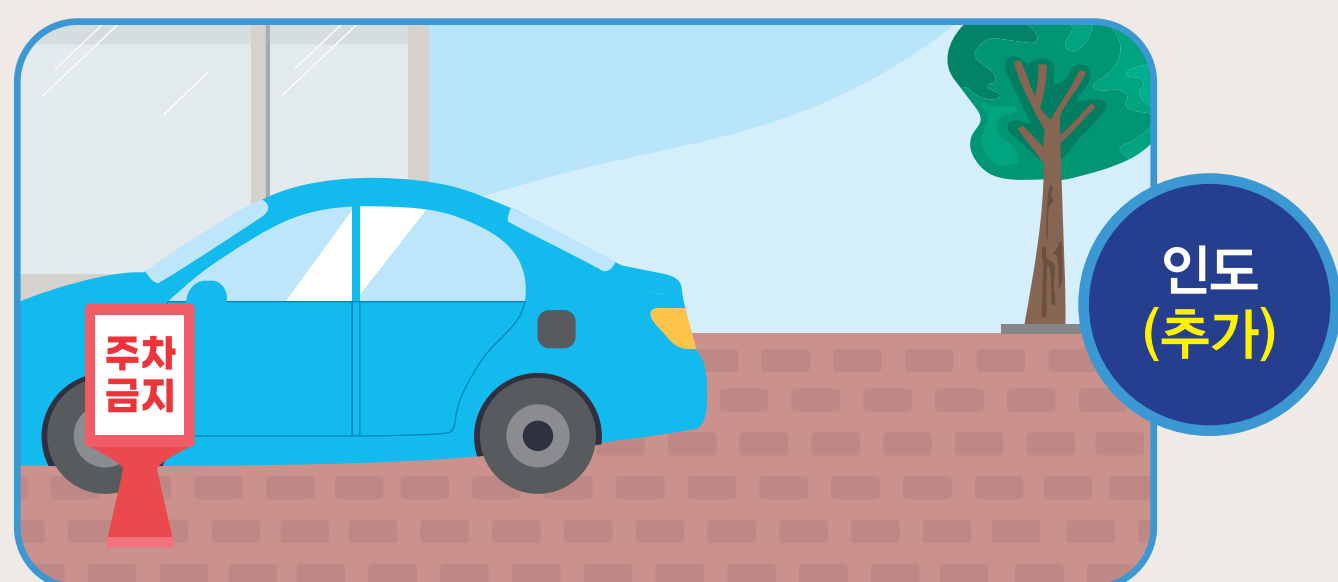
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
정지 상태 차량



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을 침범한
정지 상태 차량



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
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



인도(보도) 위 정지 상태 차량
※계도기간 : 2023. 7. 1. ~ 2023. 7. 31.

■ **신고방법**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

■ **신고요건** :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

-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(최대 4장)
-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-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

■ **과태료 부과** : 요건 구비 시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

■ **신고대상** :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

- 소화전 반경 5m : 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(금지 표지판/노면표시)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- 교차로 모퉁이 5m : 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(금지 표지판/노면표시)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
- 버스 정류소 10m : 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- 횡단보도 :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
- 어린이보호구역 :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 (평일 08:00~20:00)
- 인도(추가) : 인도(보도) 위 정지 상태 차량 (평일 08:00~20:00, 주말 및 공휴일 09:30~17:3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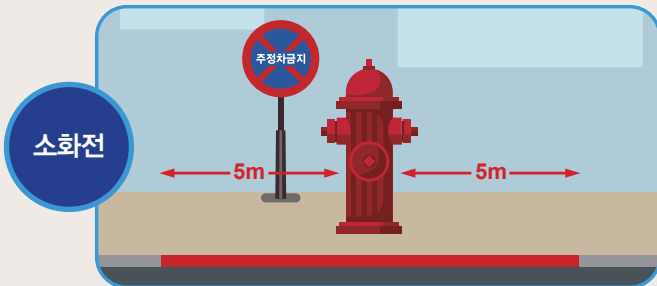
행정안전부



남 동 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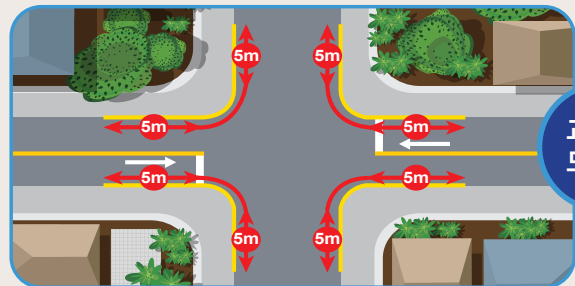
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**꼭** 비워두세요!

불법 주·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
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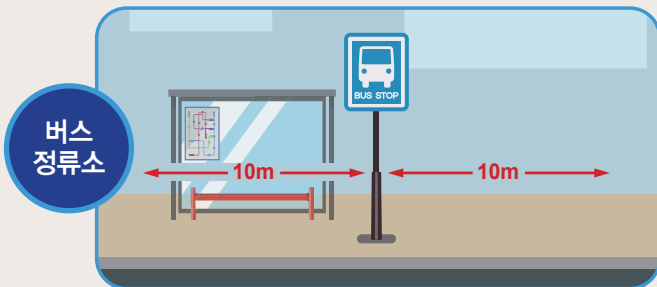
소화전

주·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
정지 상태 차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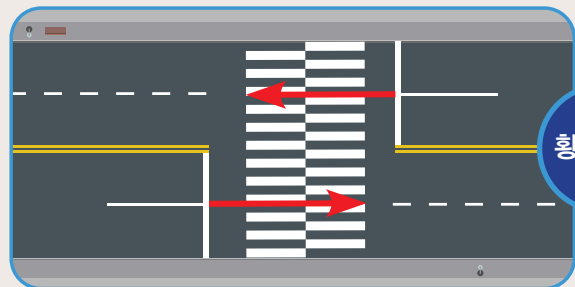
교차로
모퉁이

주·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
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



버스
정류소

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
정지 상태 차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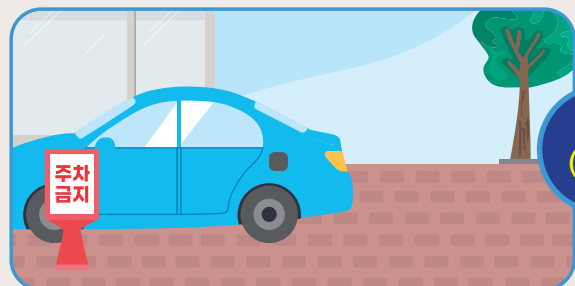
횡단보도

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을 침범한
정지 상태 차량



초등학교
정문 앞

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
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



인도
(추가)

인도(보도) 위 정지 상태 차량
※계도기간 : 2023. 7. 1. ~ 2023. 7. 31.

■ 신고방법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

■ 신고요건 :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

-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(최대 4장)
-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-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

■ 과태료 부과 : 요건 구비 시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

■ 신고대상 :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

- 소화전 반경 5m : 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(금지 표지판/노면표시)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- 교차로 모퉁이 5m : 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(금지 표지판/노면표시)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
- 버스 정류소 10m : 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- 횡단보도 :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
- 어린이보호구역 :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 (평일 08:00~20:00)
- 인도(추가) : 인도(보도) 위 정지 상태 차량 (평일 08:00~20:00, 주말 및 공휴일 09:30~17:30)



행정안전부



남동구